

『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2월 20일

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,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로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 변경
 - 재래시장 ⇒ 전통시장
 - 시장활성화구역 ⇒ 상권활성화구역
-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,
- 「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를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로 제명 변경하고
- “재래시장”을 “전통시장”으로 “시장활성화구역”을 “상권 활성화 구역”으로 용어 변경

-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 안이므로 일부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